

1. 개정이유

공영 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 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안 제1조의3)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단의 장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단의 장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조의3(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 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 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